

인천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가단2094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824,746원 및 그 중 12,778,103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2021. 3. 1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8.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2020. 8. 14. 접수 제3704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2016. 4.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의 C에 대한 위 채무를 9,000만 원을 한도로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A는 2020. 9. 15. 이후로 C에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은 2020. 10. 16. 원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21. 1. 22. C에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13,208,263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30,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78,103원,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1. 23.부터 2021. 2. 9.까지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연 7%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46,643원 합계 12,824,746원 및 그 중 12,778,103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3.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20. 8. 14. 피고 A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1,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고, 피고 A는 2020. 9. 15. 무렵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으며, C은 2020.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피고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나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B은 피고 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